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실용신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술 패권 시대에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,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빠른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실용신안 등록출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)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우선심사의 대상)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61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.	제5조(우선심사의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4.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특허제도과	
연 락 처	(042) 481 - 8243